

## 2) 전남의 소작쟁의 전개

일제시대 소작관계는 철저한 식민주의의 고율적 고문소작료였으며, 불안정한 소작기간 등 착취를 의미하는 지주주의적 토지제도의 특징을 나타낸다. 소작료율은 꾸준히 등귀하여 특수한 공황기를 제외하고는 토지수익률을 크게 올렸으며, 이에 따라 조선의 소농, 특히 소작농의 고통은 극에 달하였다.

그 결과 소작쟁의가 격화되었는데, 본격적인 소작쟁의는 1920년 일부 지역의 농민에 대한 소작료 감면과 운반료 인상요구를 계기로 폭발하였다. 당초 15건에 불과하였던 소작쟁의가 요원의 불길과 같이 번져 1923년에 176건, 1928년 1,590건, 1934년에 7,544건, 1937년에 3만 1,799건이 발생하는 급증현상을 나타냈다.

연도별 소작쟁의 건수

연도	건수	연도	건수	연도	건수	연도	건수
1920	15	1925	204	1930	726	1935	25,834
1921	27	1926	198	1931	676	1936	29,975
1922	24	1927	275	1932	300	1937	31,799
1923	176	1928	1,590	1933	1,975	1938	22,596
1924	164	1929	423	1934	7,544	1939	16,452

출전: 주봉규, 『한국농업경제사연구』, 1990, 219쪽.

소작농가가 6할 이상을 차지하고 있던 당시 조선농민들의 생활은 지극히 어려운 상황이었다. 특권층인 지주들의 횡포에 견디다 못해 인간의 생존권과 기본권을 외치면서 투쟁한 소작쟁의는 순천군 서면에서도 바로 시작되었다. 순천에서는 1922년 봄에 6개소의 소작인상조회가 조직되었다.<sup>1)</sup> 그해 가을에 서면에 있는 동양척식주식회사의 집조(執租:검건)에 대해 쟁의가 일어나 부근 소작인의 결속이 굳어졌고, 보성 등지의 소작인조합이 이에 자극받아 결성되었다. 서면의 소작인들이 내세운 주장은 대략 다음과 같은 것이다.

- ① 소작료는 수확고의 4할로 할 것
- ② 지세공과는 지주의 부담으로 할 것
- ③ 소작료의 계량에는 두개(斗概)를 사용할 것
- ④ 지주는 무상으로 소작인을 사용하지 말 것
- ⑤ 1리 이상의 소작료 운반비는 지주의 부담으로 할 것
- ⑥ 지주는 소작인과 융화친선을 도모하며 소작인을 멸시하지 말 것
- ⑦ 소작권을 함부로 이전하지 말 것
- ⑧ 지주는 비상식적인 사음(舍音)을 사용하지 말 것
- ⑨ 천제지변에 의한 토지의 복구비는 지주의 부담으로 할 것

1) 金俊輔, 『農業經濟學序說』, 고려대학교 출판부, 1980, 220쪽.

이상의 조항을 내걸고 서면 소작인 1,600여 명이 지주의 횡포에 분개하여 쫓겨하였다. 그후 서면 소작인들은 순천지주회와 일단 타협하였으나 계속하여 각처에 소작인조합을 결성하였고, 다시 광주소작인연합회 주최로 '전라노동농맹(全羅勞農聯盟)'이 조직되었다. 12월 28일에는 낙안면 부근의 소작인 800여 명이 소작인상조회라는 모임을 갖고, 소작인들이 서로 협력하면서 지주들의 횡포를 막자는 결의를 하였다. 3일 후인 12월 31일에는 쌍암면 소작인 1,100여 명이 모여 농민대회를 열었고, 이와 때를 같이하여 별량면 소작인 정하연, 김학동 등 50여 명이 소작대회 기성회조직을 가졌다.

### 순천의 소작쟁의 연표

연 도	내 용
1912. 6. 29.	순천지방 금융조합 설립
1915.	순천무진회사 여수지점 개점
1919. 3.	송주군 주암 금융조합 설립, 송주학구병참소 설치
1922. 3.	6개소 소작인상조회 조직
1922. 8.	순천지방 금융조합을 순천금융조합으로 개칭
1922. 12.	순천군 서면 소작인 1,600여 명, 지주횡포에 항의 쫓겨
1922. 12. 31.	쌍암면 소작인 1,000명 농민대회 집회
1922. 12.	순천군 낙안면 소작인 1,100여 명 농민대회 개최
1923. 3.	순천·고흥·보성의 지주들, 연합지주대회 개최
1923. 4. 10.	순천면농민대회 총회는 소작권이 박탈될 경우 공동경작 결의
1923. 7.	순천소작인 연합회 총회의 소작조건 개선 결의
1923. 10.	순천소작인 400여 명, 악덕지주에 대한 남집(濫執)소작료 불납 결의
1924. 3. 9.	남조선 노동동맹 창립총회 개최(삼남지역 141개 노동단체 참가)
1925. 6.	순천 소작쟁의 공판, 작인 승소

출전: 광주일보사, 『광주·전남 100년 연표』, 1993.

이와 같이 소작쟁의는 서면에서 발단하여 전국으로 불길처럼 번졌으며, 민족운동으로 변모하여 그들의 목적을 관철하기에 이른 것이다.

1923년 1월 4일 순천면과 보성군 벌교면 소작인들이 연합하여 소작인상조회를 창립했는데, 이에 대해 3월 5일에 순천·고흥·보성 3개 군 지주들이 모여 연합지주대회를 개최하였다. 당시 순천지역 지주로서 만석 지주가 4명, 천석 이상이 14명, 백석 이상이 52명에 달했다. 이 운동은 1923년 4월 14일 충북 영동까지 확대되어 소작농민 수백 명이 지주공격대회를 열어 공존공영 등의 표어를 내걸고 군중시위에 들어갔다. 이에 8월 1일부터 8월 16일까지 이틀간 김해에서는 농민 1만여 명이 반형평운동(反衡平運動)으로 비화되었다.

1923년 1월 16일 광주농민 500여 명이 소작쟁의 문제로 경찰서를 습격하다가 대다수의 농민들이 검거되었다. 이해 7월 9일에는 전남 신안군 암태면(岩泰面) 농민 600여 명이 소작쟁의로 구속된 동료농민의 석방을 요구하면서 관할지원인 목포까지 가서 법원 앞에서 단식농성투쟁을 벌였다. 이해 11월 26일에는 소작료불납을 동맹한 전남 나주 동양척식주식회사 소작인 1만여 명이 무장한 일본경찰과 충돌한 사태가 있었다.

1926년 1월 3일에는 전남 신안군 자은면(慈恩面)에서 쟁의 중에 있던 소작인 1,000여 명이 맨주먹으로 완전무장한 일본경찰 280여 명과 싸워 농민 40여 명이 중경상을 입었고 20여 명은 주동인물로 검거된 불상사가 있었다.

이상의 사건을 통해 당시 소작인들의 조직적 실행행사의 불길이 순천에서 발단이 되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소작운동이 항일민족운동으로 변하면서 전국 방방곡곡으로 파급되었다. 또한 당시 순천 소작쟁의의 선구자라 할 수 있는 박병두가 일본경찰에 체포되어 억울하게 옥사당한 사실은 지주들의 횡포가 얼마나 심하였는지를 알려준다. 소작쟁의의 격화로 일제도 소작관계의 개선이 불가피해지자 1932년 조선소작조정령(朝鮮小作調停令)과 농지령(農地令)을 공포·시행하였는데, 이것은 소작쟁의를 관의 조정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치에 불과한 것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그러나 계속되는 소작쟁의로 새로운 소작법을 제정하게 되었고, 이것이 조선농지령(朝鮮農地令)이었다. 1934년에 제정 공포된 조선농지령은 소작인에게 특별한 과오가 없는 한 소작은 3년, 영년작물(永年作物) 재배는 7년의 소작기간을 보장하였고, 이 이상 연장할 수 있는 소작인 보호규정을 첨가하고 있다. 그러나 1930년대 격심한 공황으로 일본은 그 위기를 대륙침략으로 타개해보려고 독점자본과 군부세력이 결탁하여 1931년 만주를 침략하고, 1937년 중국 본토침략을 단행하였다. 그리하여 일본에서는 해마다 수많은 농촌장정이 전쟁과 군수공장으로 동원되어 갔으므로 종래의 산업은 모두 군수무기의 제조산업으로 전환되고, 농촌은 농업노동력·농업자재 등의 부족으로 위기에 빠졌다.

이때 쌀의 과잉공급으로 희소가치를 되찾은 조선쌀은 다시 각광을 받게 되었다. 그리하여 일본은 일단 중지되었던 산미증식계획을 1939년에 새로운 내용으로 개편하여 강력하게 실시하기 시작하였다. 즉, 전시체제에 돌입한 일본은 군량미 확보를 위하여 조선의 미곡소비를 직접 통제할 필요에서 미곡배급제를 실시함과 동시에 강제공출제도를 실시하여 무자비한 식량강탈에 나섰다. 당시 공출대상이 되었던 산물은 미곡만이 아니었다. 각종 잡곡·면화·모시 등의 특용작물, 채소, 심지어는 송탄, 송진, 고사리 등에 이르기까지 40여 종에 이르렀으며 전시 총동원이라는 명목으로 농산물은 물론 순가락과 낫그릇마저도 강탈해갔다.

지주와 소작인이라는 자유로운 신분계약관계에서 부당한 노동조건, 즉 소작권보호와 소작료인하 등의 소작조건 개선을 위한 투쟁이 소작인조합과 노동조합 등의 조직체를 통하여 민족해방운동 등으로 전개되었던 것이다.